가한구추 해복한지민

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제849호 2023. 2. 7.(화)

www.gongju.go.kr



선	기관의장	회			
람		람			



발행 : 공주시 편집 : 홍보미디어실 ☎ 041-840-2544

우)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

	_								
【공	고】								
제202	3-210호	공주시	노인 등	대중교통	이용지원이	관한 조례	일부개정조례인	<u> </u>	3

공주시 공고 제2023-210호

「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7일

공 주 시 장

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공주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조례명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위(안 제2조)
 -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
 - [출입국관리법]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
 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 - 「난민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
- 제명 변경 및 기타 자구 수정
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7. ~ 2023. 2. 27. (21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<u>2023년 2월 27일까지</u> 공주시장(참조 : 교통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·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·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· 기타 참고사항 등
- 나. 의견제출할 곳 : 공주시청 교통과(대중교통팀)
 - · 주 소 : 공주시 봉황로 1 / 우편번호 32535
 - · 이 메 일 : ysm3427@korea.kr
 - · 전화번호 : 041-840-8733 FAX : 041-840-2328
- 다. 제출방법 : 우편, 전화, 메일, 팩스, 직접방문 등

5. 참고사항

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(www.gongju.go.kr) 고시·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] 조례명 : 공주시 노인	등 대중교통 이용지원	에 관한 조례
] 의 견		
	입법예고(안)	의 견(안)	사 유
7	의견제출자		
	- 성 명 (단체인 경우 F	가체면 및 대표자 성명)·	
	- 주 소:		
	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
	기타 참고사항 :		

공주시 조례 제 호

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"를 "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공주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"을 "공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"으로, "도모하여"를 "도모하는 등"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"노인 등"이란"을 ""이용지원 대상자"란"로 하고, "다음"을 "사람으로서 다음"으로 하며, "말한다"를 "말한다. 단,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「출입국관리법」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,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,「난민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."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"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"를 "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"로 하며, 같은 호 사목 중 "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·청소년"을 "6세이상 18세 이하인 아동·청소년"을 "6세이상 18세이하인 아동·청소년"을 "6세이상 18세이하인 아동·청소년"을 "이용지원 대상자"로 하고, 같은 조제5호 중 "대중교통운영자"란"을 "대중교통운영자"란 "대중교통운영자"란 "대중교통운영자"란 "대중교통운영자"란 "대중교통운영자"란 "대중교통운영자"란 "대중교통운영자"란 "대중교통은 양자"란 "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"으로 한다. 제3조제1항 중 "노인 등"을 "공주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3항 중 "노인 등"을 "사람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노인 등 대중교통"을 "대중교통"으로, "노인 등이"를 "시민이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요금할인 대상 및"을 "이 조례에 따른 이용지원 대상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노인 등은「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」를 지참하여야"를 "사람 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탑승 시 내보여야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노인 등은 읍장·면장·동장"을 "사람은 읍·면·동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신청된 교통카드 요금할인 대상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"를 "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"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양도·대여 금지)"를 "(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다른"을 "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"으로 한다. 제9조제3항 중 "읍장·면장·동장"을 "읍·면·동장"으로 한다.

[별표]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(제4조 관련) 제1호 중 "만 75세"를 "75세"로 하고, 제4호 중 "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·청소년"을 "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·청소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 원에 관한 조례	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 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공주시 노</u>	제1조(목적) <u>공주시민의</u>
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	대중교통 이용지원
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	
진을 <u>도모하여</u> 대중교통 이용	<u>도모하는 등</u>
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
2. <u>"노인 등"이란</u> 공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<u>다음</u>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.

가. ~ 마. (생 략)

바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
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
5.18 민주화유공자 및 같
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

사.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

하인 아동・청소년

3. "교통카드"란 공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<u>노인 등</u>에 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.

4. (생략)

2. <u>"이용지원 대상자"란</u>
<u>사람</u>
으로서 다음 말한다.
단,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
경우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
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제6
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
람 및「출입국관리법」제31조
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
람,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
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
이민자,「난민법」제2조제2호
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
<u>한다.</u>
가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제4조
사. <u>6세 이상 18세 이하인</u>
아동・청소년
3
<u>이용지원 대상자</u>
4. (현행과 같음)

- 5. "대중교통운영자"란 대중교
 5. "대중교통운영자"란 「대중

 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
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

 통시설을 경영・관리하는 자
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

 를 말하다.
 른 ------
- 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<u>노인 등</u>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(생략)
 -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<u>노인</u>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 록 이용하여야 한다.
 -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<u>노인 등</u>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협력하고, <u>노인 등이</u>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할인대상 등) ① <u>요금할인</u> <u>대상 및</u>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.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 인받으려는 <u>노인 등은「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」를 지참하여</u>야 한다.

_	·
	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
	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
	른
제3	조(책무) ① <u>공주시민(이</u>
ੋਂ	<u> </u>
_	
_	
_	
(2	② (현행과 같음)
	③) <u>사람</u>
_	
_	
_	,
(2	<u> </u>
_	
_	<u>시민이</u>
_	
_	
_	
제4	조(할인대상 등) ① <u>이 조례에</u>
<u>u</u>	<u> </u>
(2	2)
-	<u>사람은 반드시 교통카</u>
<u> </u>	<u> </u>
_	

-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<u>신청된</u> 교통카드 요금할인 대상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③ (생략)
- 제6조(양도·대여 금지)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9조(사후관리) ①・② (생 략)
 - ③ <u>읍장·면장·동장</u>은 할인 대 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.
- [별표]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 (제4조 관련)
 - 1. 1. <u>만 75세</u> 이상인 사람
 4. 8. <u>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</u>
 <u>인 아동·청소년</u>

제3조(전경) (D
<u>사람은 읍·면·동장</u>
② 신청한 사람
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
<u>을 갖추고 있는 경우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)
<u>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</u>
<u>나 다른</u>
제9조(사후관리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 <u>읍·면·동장</u>
[별표]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
(제4조 관련)
1. 1. <u>75세</u> 이상인 사람
4. 8. <u>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</u>
<u>동·청소년</u>